



Just the Facts for NY Parents

뉴욕 학부모가 알아야 할 사실들

영어 미숙 학생(LEP)을 위한 서비스

2001년도의 한 아이도 낙오되지 않게 하기(NO CHILD LEFT BEHIND: NCLB) 조항은 모든 아이들의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방 정부의 법입니다. 이 법은 학교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학부모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부여하며, 실제로 효과가 있는 교수법을 지향합니다. 이 설명서는 뉴욕 학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의 일부분을 알려 줍니다.

아이가 최근에 미국으로 왔거나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다가 학교에 들어왔을 경우...

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학생은 영어를 잘 이해하고, 말하고, 읽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지금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없으면, 영어학습자를 위한 특수반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NCLB에 의하면 이것을 영어 미숙 학생(Limited English Proficient: LEP)을 위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뉴욕주의 영어 미숙 학생들은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ESL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으로 제 2 언어로서의 영어(ESL)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NCLB에 따라, 영어 구사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타이틀 1 기금을 받는 학교는 학생이 이중언어 프로그램이나 ESL반에 속해 있음을 부모에게 알리고, 이 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돕는지를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어 구사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타이틀 1 기금을 사용하는 학교는 개학 후 30일 이내에, 또는 학생이 학기 중 영어 미숙 학생반 수업을 시작한 지 2주 이내에, 아이가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ESL반에 속하였음을 부모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영어를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만큼, 부모는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ESL반의 모든 것과, 또 이 반들이 어떻게 아이의 영어 이해력, 말하기 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로부터 알게 되는 것들--

- 왜 아이에게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ESL반이 필요한가.
- 아이의 현재 영어 구사능력이 어느 정도이며, 학교는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였는가.

- 아이의 현재 학교 생활은 어떠한가.
-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ESL반이 어떻게 아이가 영어를 잘 배우도록 도와주고, 다른 학과목에도 도움을 주는가.
-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ESL 프로그램의 학습 내용과 교수법이 어떻게 다른가.
- 얼마동안 아이가 이 반에 있어야 하는가.

학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학교에서는 영어를 가르치는데 여러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NCLB에 따라, 학교에 여러 종류의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ESL반이 있는 경우, 아이의 교사는 학부모가 반을 선택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만일 아이가 특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아이의 특수교육 담당교사와 이중언어 교육교사 또는 ESL교사가 부모와 함께 개별교육 프로그램(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을 짜서 목표에 이르도록 계획합니다.

아이가 영어로 잘 이해하고, 말하고, 읽고, 쓰도록 배우는 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만일 아이가 벌써 영어 미숙 학생반에 들어있다면, 그 반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을 것입니다. 아이의 교사에게 부모의 모국어로 쓰여진 유인물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또는 학부모-교사 면담 때에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 아이가 영어를 이해하고, 말하고,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이 필요한데도, 도움을 받지 않고 있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학급 담임 교사나, 이중언어 교육교사, ESL교사 또는 교장 선생님을 만나십시오.
- 학교에서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성인을 위한 영어 반에 대해서도 알려 줄 것입니다. 지역 학군 내에서 무엇이 제공되는지에 대해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 조정관에게 알아보십시오.
- 영어를 배우고 있는 다른 학생의 가족과 교류하고 싶으면, 학교의 학부모 조정관이나, 학부모 그룹 리더를 만나 보십시오. 그들과 관심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룹을 조직하는 데 돕고 싶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이 자료는 연방 교육법 **한 아이도 낙오되지 않게 하기(No Child Left Behind) 조항**에 대한 뉴욕 학부모 정보 시리즈 중의 일부입니다. **No Child Left Behind** 파트 A, 섹션 1112 (g)는 “영어 미숙” 학생(LEP)들을 위한 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 사실들(Facts)”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에게 묻거나, 뉴욕주 교육부 (nclbnys@mail.nysed.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혹은 웹사이트 <http://www.emsc.nysed.gov/deputy/nclb/nclbhome.htm> 를 찾아가 보십시오. **No Child Left Behind** 연방 웹사이트인 <http://www.nochildleftbehind.gov/parents/>에는 학부모를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페이지가 있습니다.